
2014년 쿠바, 개혁의 결과와 시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

홀리오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에스트라다

법학박사, 아바나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교수

원제와 출처: Julio Antonio Fernández Estrada, “Marco institucional de protección de la ciudadanía ante las consecuencias de la reforma, Cuba 2014”, en *Oxalá*, No. 36, 2014, pp.115-132.

핵심어: 제도, 법, 개혁, 시민권

서론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하되 국가와 정부의 모든 직책을 위임한다고 발표한 2006년 이후로¹⁾ 경제, 정치, 법, 제도, 사회 분야의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두고 공식석상이나 쿠바 언론에서 개혁이라고 명명한 적은 없었다.

쿠바의 개혁 과정은 소련의 개혁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쿠바식 ‘사

1) 피델 카스트로는 2006년 7월 31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2011년 개최된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되었다.

회주의 모델의 현실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현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쿠바공산당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이 현실화는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노선'을²⁾ 채택한 이후, 쿠바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조정 작업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최신화(update)에 집중하고 있는 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쿠바 역사 기술에서, 특히 20세기의 역사 기술에서, 개혁주의는 일반 역사책은 물론이고 연구서나 논문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다. 이는 18세기에 나온 개혁주의가 노예제나³⁾ 종속성 같은 쿠바의 고질적인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쿠바의 개혁주의가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국내외 역사가들로부터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는 18세기부터 스페인 본토와의 관계나 쿠바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쿠바 내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쿠바의 개혁주의자들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근대화를 추진하며 애국주의를 고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쿠

2) 이 '노선'은 2011년 4월 아바나에서 열린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되었다. 이에 앞서 '노선' 중 일부가 2010년 1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인민권력전국회의(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의 제7차 상임위 정기회의에서 논의,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50만 개 이상의 안건이 제안되었고, 그중에서 313개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인민권력전국회의는 시행령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진척 상황을 점검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이 위원회는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3) 1811년 아랑고 이 파레노는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글을 스페인 의회에 보냄으로써 쿠바에 노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했다(Hortensia Pichardo, Documentos para la historia de Cuba. Época Colonial, Editorial Nacional de Cuba; Editora del Consejo Nacional de Universidades, La Habana, 1965, pp.238-278). 이와 반대로 1822년과 1823년 스페인 의회에 대표로 참석한 사제 펠릭스 바렐라(Félix Varela)는 쿠바의 노예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산 카를로스과 산 암프로시오 신학교(Seminario de San Carlos y San Ambrosio)에서 최초로 헌법 강좌를 신설하고 카디스의 자유헌법을 연구하였다.(Ibid., pp. 291-299)

바의 석학인 프란시스코 데 아랑고 이 파레뇨가⁴⁾ 추진하여 설립한 농상영사관(Consulado de Agricultura y Comercio)이나 에스파다 주교(Juan José Díaz de Espada)가 아바나에서 행한 실천적 작업, 호세 안토니아 사코(José Antonio Saco)의 사상 그리고 쿠바에서 발전된 자치주의가⁵⁾ 그러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의 분리주의와⁶⁾ 후반의 독립주의가 쿠바의 주권을 다지는 사상과 정치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은⁷⁾ 쿠바 역사에서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있었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니까 말이다.

혁명은 1868년에 시작됐다. 이 10년전쟁(1868년~1878년)과 뒤이은 독립전쟁을 통해 쿠바는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쿠바를 유린함으로써 무기력한 스페인 제국에 맞서 투쟁한 쿠바인들에게서 10년 세월

4) 1792년 아랑고 이 파레뇨(Francisco de Arango y Parreño)는 아바나의 농업 부흥 방안에 대한 글을 써서 최고위원회를 통해 스페인 국왕에게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과학적 지식과 자료와 통계 및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아메리카 북부 식민지와 쿠바의 차이, 그리고 쿠바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과 후진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Pichardo, op. cit., pp.179-218)

5) 1811년 호세 아구스틴 카바예로(José Agustín Caballero)는 15개의 제안을 담은 쿠바 자치정부 기획안을 작성하여 아바나와 산티아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 기획안은 미국 헌법을 따르고 있으며,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진복은 배격하고 있다.(Pichardo, op. cit., pp.232-238)

6) 쿠바 최초의 분리주의는 19세기 초반에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에 망명 중이던 바야모 출신의 법률가 호아킨 인판테(Joaquín Infante)가 1812년에 작성한 쿠바헌법의 초안은 쿠바 최초의 분리주의 제안이었다. 그는 3권 분립이 아니라 군대를 포함한 4권 분립과 입법 조직의 위헌 행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인 중심의 계급사회를 유지할 것과 공정성, 정의, 분배의 원칙하에 농업에서의 노예제 유지를 주장했다.(Pichardo, op. cit., pp.179-287)

7)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근대화해야 한다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주장에서 19세기 초반의 병합주의에 이르기까지 쿠바의 개혁주의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혁주의 안에는 급진적인 자치주의 경향도 있었다. 개혁주의자 아랑고 이 파레뇨는 노예제를 지지했으나 사코는 노예제가 지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노예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사코는 또한 1837년 스페인 의회에서 쿠바인 의원을 축출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쿠바와 미국의 합병에도 반대했다. 1865년 개혁당(Partido Reformista) 선언은 2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Pichardo, op. cit., pp.346-375)

을 훔쳐갔다. 19세기 초 개혁주의의 19세기 말 자식인 자치주의는⁸⁾ 무장투쟁을 통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기보다는 쿠바를 스페인과 동등한 지위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혁명의 출발점은 자치주의를 꿈꾸던 영웅들의 역사였지만, 자치주의를 주장하던 사상가들, 애국자들은 혁명의 물결에 잊혔다.

호세 마르티와 그가 이끌었던 쿠바혁명당은 증오를 버리고 신속히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패자마저도 사회적·윤리적 변화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 데스 마르티네스 에레디아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마르티의 인민은 주인공이 될 것인데, 그 주인공은 특정 계급이나 지식인 혹은 카우디오 집단이 아니다.”⁹⁾

20세기 쿠바혁명 또한 마르티의 포용의 윤리로 실행되었다. 신식민공화국이 들어선 뒤 20년 동안 정치적 지배계급은 마르티를 시인이나 웅변가로 평가했을 뿐이다. 마르티를 그 이상의 존재로 처음 평가한 사람은 홀리오 안토니오 메야(Julio Antonio Mella)였다. 이로써 마르티의 사상은 급진적 공산주의자와 연계되었고, 이후 1950년대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홀리오 세사르 구안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메야는 「호세 마르티 사상에 대한 주석」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취하지 않은 마르티의

8) 1878년 8월 1일, 아바나에서 자유당(Partido Liberal)이 출범했다. 1881년 자유당은 자치주의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자치자유당(Partido Liberal Autonomista)으로 탈바꿈했다. 이 당은 개혁주의자들이 1878년 쿠바공화국의 몇몇 해방군 지도자들과 스페인 당국이 맺은 산혼협정(Pacto de Zanjón, 1878)의 정신을 수용했다. 이에 반해 안토니오 마세오(Antonio Maceo)는 독립과 노예제 폐지가 보장되지 않은 평화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산혼협정에 반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Fernando Martínez Heredia, *Andando en la Historia*, Ruth Casa Editorial; Instituto Cubano de Investigación Cultural Juan Marinello, La Habana, 2009, p.138.

약점을 정당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르티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양자의 접점이 어디인지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¹⁰⁾

마르티는 쿠바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1953년 7월 26일 무장투쟁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의 존재와 말은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정치적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적 순수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였다. 쿠바가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짐에 따라 1극체제로 변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쿠바는 1992년에 사회주의헌법(1976년 제정)을 개정했다. 이때 마르티의 존재와 사상은 다시 한 번 쿠바를 정치체제의 균열로부터 구해낸 바 있다.

개정 헌법 제5조는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힘이 공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공산당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르티주의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는 마르티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공화국이라는 마르티의 사상을 담고 있다. 이는 마르티가 정치적 버팀목이자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공식적 합법성을 지탱하는 존재임을 입증하고 있다.

1968년 피델 카스트로가 1868년 혁명 100주년 기념 담화에서 제시하여 1975년 제1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공식화된 후 초중고등교육에 적용된 사안이 있으니, 쿠바혁명은 1868년 10월 10일에 시작되었으며 1959년 1월 1일까지 성공하지도 못했고, 역사적 사명을 온전히 달성하지도 못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로써 19세기 개혁주의자들은 물론이고 1901년부터 1959년까지 신식민공화국 시대에 혁명을 이뤄내지 못한 20세기 개혁주의자들은 역사의 장에서 제외되었다.

10) Julio César Guanche, “Julio Antonio, qué pasa en Cuba?”, en Anan Cairo(comp.), *Mella 100 años*, Vol. 2, Editorial Oriente; Ediciones La Memoria, Santiago de Cuba; La Habana, 2003, p.343.

I

쿠바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정치 개념이 하나 있다. 쿠바 기관이나 국가와 정당의 메시지나 주권자인 인민(1976년 헌법 제3조의 규정)이나 심지어 학계에서도 쓰지 않는데, 그 개념은 다름 아닌 시민권이다.

이 글에서는 쿠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시민권이고, 둘은 개혁이며, 셋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자주 언급하는 제도성이다.¹¹⁾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쿠바에서 시민사회나 인권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극단적인 두 사건과 관련이 있다.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 그리고 소련과의 정치, 경제, 사상, 군사 등 전반적인 전략적 동맹이 그것이다. 이 두 사건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때로는 정치를 이해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마도 쿠바 고위층은 이런 관계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았겠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 쿠바혁명의 사상, 주장, 이론적 토대, 이데올로기, 윤리를 재생산할 때는 굴레로 작용했다. 비록 쿠바의 발전과 사회주의에 관해서는 자율적이고 진정한 비판이 없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두 가지 예만 들자면, 천 체바라의 사상과 잡지 『비판정신』의 발간이다) 결국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련의 독단주의에 붙잡히고 말았다.

소련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 정치경제론과 마르크스주의의 매뉴얼을 암송하던 관료의 재생산적 사유가 지배적이었던 탓에 쿠바혁명의 독특한 성격은 실중

11) 2009년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와 각료회의(Consejo de Ministros)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는 제도성 강화를 역설하며 이 과업이 인민을 위한 식량 생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aúl Castro Ruz, “Es preciso caminar hacia el futuro, con paso firme y seguro, porque sencillamente no tenemos derecho a equivocarnos”, en *Granma*, diciembre de 2009)

되었다. 물론 쿠바혁명의 상징, 사건, 사상, 가치,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국이나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개념과 뒤섞이거나 대체되었다.

이는 권리를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정치적·법률적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런 문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시민이란 자유주의 담론에서 말하는 자유의 영역, 즉 개인의 권리(헌법이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우고 아스쿠이가 지적하듯이 “부르주아 사회의 법률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도, 효과적이고 기민한 정치적·행정적 조치에 비하면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¹²⁾

그로 인해 쿠바혁명 55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헌법은 시민사회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시민사회 공간이 미흡하고, 1976년 헌법이 제정되고 38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에 관한 법은 없었으며, 인권은 그 어느 곳에도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말이 쿠바에 권리가 없다거나 권리를 보호하지도 않고 시민사회에 저항과 자치의 분위기가¹³⁾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한, 최근 반세기에 시민권과 국가의 관계가 특별하지만 어려웠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12) Hugo Azcuy, “Revolución y Derechos”, en Hugo Azcuy, *Análisis de la Constitución Cubana y otros ensayos*, Ruth Casa Editorial; Instituto Cubano de Investigación Cultural Juan Marinello, La Habana, 2009, p.284.

13) 쿠바 시민사회에서 기본적인 법은 1984년 54법(결사법)이다. 이 법은 비정부기구(NGO)와 국가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국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제정에서부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관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 협회, 센터, 비정부기구 등은 쿠바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이러한 단체가 환경보호, 신세대를 위한 교육, 평화의 문화, 사회 갈등의 중재, 대중 교육, 영속농문화(permaculture), 자유로운 성적 지향 옹호,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등의 운동에서 국가보다 앞서나갔기 때문이다. 쿠바에는 종교관련 법이 없으므로, 비록 1992년부터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 성격의 비정부기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런 단체의 활동을 용인하지는 않는다. 10년 전부터는 새로운 사회단체를 법무부에 등록하기도 어렵다.

II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가? 또한, 시민권과 개혁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최근 수년간 우리 쿠바인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영역이 제도성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국가의 목표에 따르면, 제도성을 강화해야 한데, 어떤 제도성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조차 못하고 그저 말만 반복되어 왔다.

제도성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며(하지만 공식 사고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쓸데없이 엄격한 법률을 폐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미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률은 현실화의 수단이지, 어떤 경우라도 쿠바 사회주의 발전의 장애 요소를 개혁하려는 인민의 의지 표현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혁명이 법률의 물리적 원천임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관료주의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개혁에 타당성이 있고 또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법률을 통해서 내부로부터 변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필자는 제도적 틀, 광의의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 즉 제도나 국가 구조나 시민사회로 이해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도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쿠바의 인민은 혁명 속에서 살고 있다. 이로부터 지난 몇십 년 동안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현상이 생겨났다. 즉, 국가와 국가 정책을 혁명이라고 불렀으며, 관료나 국가 기관의 대표자들은 혁명지도자가 되었다. 따라서 혁명은 끝난 것이 아

나라 국가로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피델 카스트로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인용하였다. 혁명은 바뀌어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며, 중간 간부의 정치적 대담성과 자발성을 촉진하고 비판(‘건설적’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앞에 붙었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기존 사상은 새로운 사상을 배척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사고를 언급하면 자만심에 빠졌다고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 창조성을 발휘하거나 국가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면 위험한 일로 간주하거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새로운 형태의 모든 사회단체는 제아무리 혁명적인 의도를 지녔다고 할지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로써 쿠바 인민에게 혁명에 대한 각별한 정당성이 각인되었다. 인민은 혁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가 인민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한다거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들을 수 있다. 시민들은 국가가 물건을 팔기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공짜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빈곤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마주한 인민은 쿠바가 혁명 중에 있거나 사회주의란 그런 것이라는 등 역사적 운명을 운운하는데, 이는 인민을 사회적 혜택에서 배제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 월권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당과 국가가 혁명에 대한 혁명으로서 ‘현실화’, 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III

그렇다면 쿠바 인민을 위한 개혁은 어느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제6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승인된 ‘노선’은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에게 가장 과급력이 컸던 변화는 정치적 측면, 쉽게 말해서 이민법 개정이다.¹⁴⁾ 이제 쿠바인은 내무부 허가 없이도 출국이 가능해지고, 외국 체류 기간도 24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귀국할 때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수속을 밟지 않으면 영원히 쿠바를 떠난 것으로 간주했다). 이주한 사람이 국적을 회복하려면 다시 쿠바로 돌아와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법규 개정의 일환으로 주택 자유매매가 합법화되었다.¹⁵⁾ 사실 지금까지도 민법이나 주택법이 주택매매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매권(derecho de tanteo)이라고 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었으며, 또 매매취소권(derecho de retracto)이라고 하여 선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매매는 무효화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traspaso)이라고 하여 전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었던 개인 소유 자동차도 국가의 선매권과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해졌다.¹⁶⁾

이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전형적인 혁명법으로, 국가를 영원히 떠난 인민의 모

14) 1976년 제312호 국가평의회령(decreto-ley)을 개정한 제302호 국가평의회령의 주요 골자로, 개정령은 2012년 10월 11일 통과되었으며, 2013년 1월 14일 부로 발효되었다(참고로 쿠바의 법체계는 헌법, 법, 국가평의회령, 각령[decreto]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가평의회령은 문자 그대로 국가평의회령의 행정명령이며, 각령은 각료회의의 행정명령이다. 일반적으로 국가평의회령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옮긴이).

15) 2011년 11월 10일 부로 시행된 제288호 국가평의회령으로 주택매매에 관련한 금지 사항은 삭제되고 주택매매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16) 1979년 11월 22일 제40호 각령은 양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13년 12월 31일 제320호 각령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수입 및 매매를 보장하고 있다.

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1961년의 제989호법을 폐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주택과 자동차 처분이 용이하도록 개혁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지체 없이 민법이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택과 자동차 처분에 관한 새로운 법 조항을 만들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바의 현행법은 물론이고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가 따르고 있는 로마·프랑스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쿠바인 간의 부동산 매매는 오직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복잡한 은행 절차를 거쳐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가격이 백만 태환페소라 하더라도 분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도 이에 못지않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중고 자동차는 사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교환할 수는 없다. 쿠바 민법이 인정하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와 함께 법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엿보이는데, 이 이유는 법을 도구적으로, 관료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영업(trabajo por cuenta propia) 업종을 정한 이후, 자영업 업종을 대폭 확대한 개혁은 큰 지지를 받았다.¹⁷⁾ 이와 더불어 자영업 발전에 필요한 몇 가지 새로운 조치도 발표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당 테이블 수의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는 국영기업 노동자 가운데 50만 명을 풀어서(그러나 해고는 아

17) 2011년 노동부는 2010년 조치를 수정한 제33호 결정(resolución)으로 자영업 규정(reglamento)을 공포함으로써 자영업의 폭을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영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층위의 법률이 승인되었는데, 주택 임대와 관련한 2011년 제368호 각령, 일반인의 운수사업권에 관한 교통부의 2010년 제750호 결정, 농업 분야의 일용직 및 계약직 고용과 관련한 농무부의 2010년 제750호 결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관련 2011년 제284호 국가평의회령 등이 그것이다.

니다) 자영업에 합류시키겠다고(자영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발표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욱이 쿠바 헌법은 사회주의 입헌 정신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 재산은 인정하고 있다. 물론 재산권자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따른다.

지방 행정기관은 별새의 날갯짓보다 신속하게 수천 건의 자영업을 허가했다. 그리고 자영업 주인의 월권행위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고, 부당한 임금 삭감 등 자본주의식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쿠바 인민이 알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자영업자들은 쿠바중앙노동자연맹(Central de Trabajadores de Cuba) 산하의 산별노조(Sindicato Nacional)에 가입하였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만 가입하는 것이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가입하였다.

오랜 논의 끝에 2013년 새로운 노동법이 가결되었다.¹⁸⁾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영업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자영업 관련 규정은 있지만 피고용자의 권리 규정은 없다). 자영업 피고용자의 권리는 여타 노동자와 동일하다고 간주할지라도 자영업 고용주의 재량권은 고용주로서 국가의 재량권보다 훨씬 유연하고 제한을 덜 받는 데도 말이다.

말하자면, 자영업 피고용자는 고용주에게 단체협약을 강제할 권리가 없으며, 노동조건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계약에 달렸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영업 고용주에 대한 파업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8) 2014년 6월 17일자 제29호 판보에 실린 2013년 노동법 제116호는 부가적 규정을 승인했다. 노동법 규정의 제326호 각령, 예술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관련 규정인 문화부의 제44호 결정, 교육 관련 노동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제160호 결정, 대학교수평가와 관련한 고등교육부의 제66호 결정, 국내 노동 및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임시 이주와 관련한 내부부의 제9호 결정, 의료 관련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의 계약, (재)배치, 승진, 자격경지 등에 관한 보건부의 제282호 결정 등이 그것이다.

예상하기로는, 이 노동법이 중소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 규정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은 경제법의 적용을 받으리라고 여겼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임시직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노동자는 노동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임금 대신에 봉사료를 받으며,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자본주의적인 경제 개방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수단(조세라든가 기타 사회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쿠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조치를 했다. 법률을 검토하지도 않고 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장 인기 있는 3D 영화관 문을 밤부터 아침까지 단도록 했다.¹⁹⁾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명목으로 엄연히 허가를 받은 사업이었는데도 말이다.

이 사업에 수천 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법적 소송도 불가능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 조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헌법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리, 의무, 보장을 규정한 헌법 7장은 영화 사업의 사유화를 금하고 있다.

관세 정책 개혁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개인은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차단했는데,²⁰⁾ 공식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는 국영 상점에서 물건

19) 각료회의 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del Consejo de Ministros)는 쿠바공산당의 공식 기관지 『그란마』 2013년 11월 2일자를 통해 3D영화 상영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알렸다.

20) 관세청은 2013년 제143호 결정과 2014년 제206호 결정으로 수입품의 범위를 규정하였다(2014년 6월

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세수를 늘리고, 그 돈으로 주요 사회 복지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이 텔레비전 광고로 널리 알려져서 이제는 공짜지만 비싸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쿠바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외국인투자법이 새로 마련되었다.²¹⁾ 이로써 마리엘 발전 특구(Zona de Desarrollo Especial del Mariel)나 해안 지역 골프장 건설 등 ‘노선’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국인투자법의 제4조를 보면, 대부분의 쿠바 법이 안고 있는 기술적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쿠바 영토 내의 외국인 투자는 온전히 보호받으며 [...]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 몰수할 수 없다”는²²⁾ 부분이 그러하다.

쿠바 헌법 제25조를 포함하여 모든 법에서 강제몰수는 오직 공익 목적일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투자법 조항은 몰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수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규정만큼이나 모순이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개발 사업의 사회적 혹은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선전, 심의는 없었다. 물론 국가가 인민 권력의 유일한 형태이고, 사회민주주의가 국가의 조직과 기능 원리일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마리엘 발전특구는 신설된 아르테미사 주(州)에²³⁾ 위치하고

11일 제30호 판보). 수입 가능 물품에 대한 통화평가는 법무부 판보에 실려 있다.

21) 2014년 4월 16일자 제20호 특별호 판보에 실린 외국인투자법 제118호 법은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22) Ministerio de Justicia, “Ley de la Inversión Extranjera”, en *Gaceta Oficial de la República de Cuba, Extraordinaria*, No. 20, 2014.

23) 2011년 1월 1일 아바나 주의 일부를 분리하여 아르테미사 주를 신설하였다 — 옮긴이.

있으며, 제301호 각료회의(Consejo de Ministros) 명령에 의거하여 이 주에서는 시법적으로 인민권력회의 의장의 행정평의회(Consejos de la Administración) 의장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데,²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인민 참여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개발 사업에서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이주 문제를 논할 때, 이 지역 행정평의회는 강제 징발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한 소송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할 법원이 징발의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새로 마련된 외국인투자법의 골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보장이며, 쿠바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는 투자를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바 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수많은 예외 규정이다. 특히 이러한 예외 규정은 쿠바 내 외국기업에 고용될 노동자의 권리 행사와 보호와 관련하여 아주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국인투자법에서 의아한 점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주의 사회의 고유한 권리를 수호할 정치적·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혁명의 진전이 지나치게 느려서 제아무리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소기업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도 쉽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역사는 또 다른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 정의보다는 거대 자본의 이익,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사회적 권리보다는 시장을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이든 점진적이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것이다.

24) 쿠바에서는 인민권력지방회의 의장이 해당 지방의 행정평의회 의장을 겸임한다. 예외적으로, 아르테미사 주와 마야베케(Mayabeque) 주에서만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지방의 행정평의회가 기업 활동에 직접 간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옮긴이.

IV

쿠바 헌법에 따르면 검찰청(Fiscal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감독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방 단위에서 전국단위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관의 국유 재산의 관리와 이용 실태를 감찰할 수 있으며, 교도소에서 법 집행을 감독하고, 국민의 청원을 접수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보호자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을 때 미성년자를 대변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국가의 대변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책무가 있다.

법률 적용을 위한 사법기관으로는 지방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법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시민권을 보호한다.

쿠바의 공공행정은 내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원과 부의 활용에 대한 행정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미흡하며, 또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제대로 실시될 가능성은 없다.²⁵⁾

검찰의 주요 역할이 적법성을 감독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기능은 고발자의 입장에서 형법을 집행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검찰의 역할은 양면의 칼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민 청원이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업무, 이를테면 업무처리 지연, 공판 이전의 미결구금 기간 연장, 범죄 예방조치 미흡, 보석 결정 지연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5) 2013년 아바나대학교의 공공행정연구소는 학술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쿠바의 공공행정 정상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중에는 소비자보호법과 자치단체법에 대한 승인이 포함되어 있다.(Julio Antonio Fernández Estrada, Noris Tamayo, y Mauricio Blanco, “Perfeccionamiento del marco regulatorio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cubana”, Ponencia presentada en el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Nacional de Economistas y Contadores de Cuba, 2013.)

한편, 사법부는 일관성 없는 범죄 정책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있다.

또한, 쿠바 법, 특히 형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국가의 우월성 앞에서 형사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바나대학교의 연구는 법원의 편파성 때문에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²⁶⁾

아마도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법적 지위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련자는 사법기관에 접근할 합법적 수단이 없다. 이러한 입법 양태가 쿠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헌법이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단에 관하여 최근 쿠바의 학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쿠바혁명이 성공하고, 사회변혁에 필요한 제반 조치(나중에는 1976년 헌법의 시행)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사법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들어 헌법에 위배되는 규제적 법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법령은 국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접근권 및 사법통제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권리 보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규제적 법령에 대한 재고가 시급한 실정이다.²⁷⁾

26) Yoel Quinta Arango, “El principio de imparcialidad como atributo consustancial a la función jurisdiccional y su relación con el ordenamiento jurídico procesal penal cubano en la actualidad”,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de la Habana, 2013.

27) Danis Antonio García Moreno, “El acceso a la justicia en materia administrativa en Cuba. Una mirada desde el Derecho Constitucional con propuestas de inclusión del derecho”,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de la Habana, 2014.

따라서 우리는 시민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범주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쿠바에서 입법은 국가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인정된 법의 원천은 인민권력전국회의의 법률이다. 다음은 국가평의회령으로 국가평의회는 인민권력전국회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하며 헌법이 규정한 최상위 국가기관이다. 다음은 각령으로 각료회의는 최상위 정부기관이다. 그 다음은 중앙행정기구나 중앙기관의 부속기관의 결정(resolución)이다.

이로 인해 쿠바의 법체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유효한 공식적 법률의 원천인 관습법과 판례가 외면받고 있다. 관습법이 정착되지도 못하고 최고 인민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지 못함으로써 재판이 과학적으로 정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행정과 판결의 질적 향상은 물론 쿠바 사회주의 법률의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평의회령과 각령과 관련한 법령 제정이 갈수록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전국적인 회의를 소집하여 법안을 논의하였는데, 이는 불완전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없었다.

쿠바의 입법정책은 폐쇄적이다. 그로 인해 애초에 과학적 형식과 방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특정 관료 그룹이 고안한 법적 틀이 변하지 않고 있다. 부차적 사안은 바뀌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다. 그로 인해 문제가 있는 법규가 생겨났으며 그러한 결점은 입법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현되는 시민권에도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앞서 밝혔듯이 인민주권지방회의, 예컨대 주 단위나 시(municipio) 단위의 인민권력회의와 행정평의회는 법령을 제정하지 못하고 결의(acuerdo)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없었고, 법원에서 활용되지도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방기관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며, 중요한 결정은 상부기관에 의존해야 한다.

쿠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1987년, 인민권력전국회의가 조사한 우려스러운 결과가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이 연구서의 초록은 준법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법체계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민이 어떻게 법 형식 간의 위계체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해석을 법령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법령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²⁸⁾

V

그렇다면 누가 시민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쿠바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없다. 대다수 사람은 이런 기관이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쿠바 헌법은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권은 검찰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관련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일이 급증했다. 그중에

28) Asamblea Nacional del Poder Popular de la República de Cuba 1987, “Estudio sobre los factores que más afectan al desarrollo de una cultura de respeto a la ley”, en *Documento 11*, Comisión de Asuntos Constitucionales y Jurídicos, Asamblea Nacional, La Habana, 1987, p.2.

서 가장 대중적인 기관은 셀리아 산체스 만돌레이의²⁹⁾ 제안으로 설립한 민원사무소(Oficina de Atención a la Población)이다. 이 기관은 국가평의회의의 부속기관으로, 여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절차를 도와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이 기관은 민원을 담당기관, 즉 공산당 사무소나 지방기관이나 중앙기관(각 부처, 각종 기관, 인민권력전국회의)에게 떠넘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몇 가지 부족한 점은 있다. 쿠바에는 검찰과 협조 하에 시민권을 보호하는 옴부즈맨(Defensoría del Pueblo)이 없다. 또한, 법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줄 수단도 없다.

쿠바에는 1917년 멕시코헌법 이래로 아메리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소원제도가 없으며, 인민권력전국회의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헌법재판소도 없다. 쿠바에서 입법으로서 인민권력전국회의는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령의 위헌성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 1979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인민권력전국회의는 그 어떤 위헌성도 천명한 적이 없다.

쿠바 헌법은 근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물론 무상 교육과 보건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보장은 실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 보장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적·정치적 수단은 많을수록 좋으며, 혁명의 사회적 이익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쿠바 역사가이자 법률가인 홀리오 세사르 구안체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29) Celia Sánchez Manduley(1920-1980). 쿠바혁명에 투신한 혁명가로 피델 카스트로의 비서로 활동했다.

시민 주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장한다는 것은 유권자나 시민공동체를 대표성의 핵심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자 위임 또는 명령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 즉 정치를 하고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 목록을 확장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물질적·사법적 보장체계를 확립하며, 시민과 다양한 인민권력기관을 위해 헌법적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³⁰⁾

1976년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는 쿠바 헌법³¹⁾ 냉전으로 대변되는 1970년대 사회주의 헌법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권리만 강조한 탓에 인신보호 영장제도나(물론 형사소송법에는 적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당시로써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제도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의 쿠바 시민에게는 혁명이 도달한 수준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 개정은 인민이 아니라 국가가 발표했다. 따라서 얼마나 심도 있게 개정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써는 개정이 부분적일지 전반적일지, 국가를 다루게 될지, 현재 진행 중인 개혁처럼 헌법을 현재화할지, 라틴아메리카에 널리 퍼진 대통령제로 회귀하지 않을 여행을 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더욱이, 모두가 바라는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새로 제정할지는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30) Julio César Guanche, “Estado, participación y representación políticas”, en *Cuba: diseño institucional y práctica política tras la reforma constitucional de 1992*, CLACSO, Buenos Aires, 2013, p.124.

31) 쿠바 헌법은 세 번(1978년, 1992년, 2002년) 개정되었다. 이 가운데 1978년 개정은 ‘이슬라 데 후벤투드’의 지명을 바꾼 것이며, 2002년 개정은 헌법 조문이 명확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다운 개정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킨 1992년 개정이다 — 옮긴이.

결론

쿠바 개혁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경제 변화의 효과가 갖 시작됐으니까 말이다. 시민권 보호를 위한 제도도 변화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중에는 정치적·사회적 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을 허용하는 법률도 있다.

이 새로운 공간과 더불어 새로운 족쇄, 무방비 상태, 사법적·제도적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악의 파노라마로서 이 글의 결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쓸모없는 제도, 세월에 묻혀 낡아 버린 제도만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법 경시 풍조는, 역사적으로 법이 지배자의 편이었고 억압의 공모자였다는 의식에서 유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이 자주 바뀌고, 전황이 법적 이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의식의 고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정치적·사회적·사법적 제도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도 못한다.

법치국가라는 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이고 혁명적인 출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구는 정의에 대한 현대의 주류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시민권을 주권적 성격으로,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을 경시하면, 가장 강력한 자본의 법칙에 빠지게 되고, 자본이 착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자본이 선호하는 것은 법도 권리도 없는 환경, 적어도 질서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보호하고 통제하는 제도성조차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인권, 민주주의, 동포애, 법 앞의 평등, 국가 기능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통제는 자본주의의 산물도 아니고, 신성한 부르주아의 업적도 아

니다. 사회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 전통과 인민이 일궈낸 것이다.

시민권 보호를 위한 쿠바의 제도적 틀은 혁명의 역사에서 유래했다. 다시 말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쿠바 사회주의가 추구한 변화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권을 형성하고 개선하는 데 혁명보다 나은 공간은 없다.

이 혁명이 진행 중인지, 역사라는 거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송두리째 뒤바꾸는 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혁명가가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이경민 옮김]